

06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활용

홍삼(蔘)제품의 품목 분류 및 FTA 원산지 결정 기준 해설





PART

06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활용



홍삼(蔘)제품의 품목 분류 및 FTA 원산지 결정 기준 해설



변달수
다미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1. 들어가며

산삼은 예로부터 귀한 취급을 받았다. 일례로 현대 창업주 고(故) 정주영 회장의 산삼 사랑은 유명하다. 80년대 유명한 심마니였던 김명택 심마니는 그 당시 여섯 줄기를 가진 산삼 6구를 캐는데, 그 길이가 무려 1m 30cm나 되고 최소 650년이 넘은 자연산 산삼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심마니가 있던 강원도 인제까지 직접 간 정주영 회장은 이 산삼을 먹기 위해 7,800만 원의 현금을 일시불로 지불했다고 한다. 그 당시 7,800만 원의 가치는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34평 기준)를 4채 살 수 있는 금액이었고, 대기업 대졸 신입 사원이 당시 월급(30만 원)을 1원도 쓰지 않고 약 21년간 모아야 하는 금액이었다.

이처럼 산삼은 귀하고 비싸서 현재까지도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대신 우리에게서는 인삼이라는 선택권이 있다. 사실 인삼과 산삼은 유전적으로 동일한 품종이다. 산삼의 씨앗을 받아 집 주변에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인삼의 시초이기 때문이다. 또한 요새는 인삼뿐만 아니라 면역력 개선에 효과가 있는 홍삼 제품들이 인기이다. 인삼 뿌리를 수확한 후 고온에서 찌서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치면 특유의 적갈색을 띠고 화학적 조성도 변화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홍삼이다. 일반 인삼은 일반적으로 약간 쓴맛과 흙냄새가 나며 더 단단하고 섬유질이 많은 질감인데 비해, 홍삼은 맛이 달고 쓴맛이 적어 흔히 일반 인삼보다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2022년 식약처의 국내 식품 생산 실적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의 전체 생산 실적 2조 8,050억 중 홍삼은 부동의 1위(점유율 21%, 5,896억)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건강 기능 식품인 홍삼에 대해, 주요 홍삼 제품류의 품목 분류 후 실제 예시를 들어 원산지 결정 기준을 해설해 보기로 한다.





2.

**홍삼 제품의
품목 분류
(주요 제품을
중심으로)****가. 홍삼 제품의 상품 구색**

홍삼 제품은 제형, 포장 방법, 가공 방법, 첨가물 유무 등에 따라 그 상품 구색이 다양해진다. 예를 들어 홍삼이 포함된 제품으로는 홍삼, 홍삼정과, 홍삼절편, 홍삼캡슐, 홍삼캔디, 홍삼젤리, 홍삼농축액, 홍삼생기력, 홍삼차, 홍삼환, 홍삼공지환, 홍삼음료, 홍삼비타민 등이 있다.

나. 홍삼 제품의 품목 분류**(1) 홍삼의 품목 분류**

홍삼의 경우 아래와 같이 품목 분류 체계로 구성된다.

〈표 1〉 홍삼의 HSCODE 분류 체계

HS CODE	12	11	20	1391
2단위(류)	채유용 종자 및 과실 등			
4단위(호)	향료/의료용 식물성 생산품			
6단위(소호)	인삼			
10단위(HSK)	홍삼(본삼)			

관세율표 제12류에서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이 분류되며, 제1211호에서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된다. 제1211.20호에서는 인삼, 백삼, 홍삼, 인삼 가루, 인삼 잎, 인삼 줄기, 코카 잎, 양귀비 줄기, 마황, 아르피카 체리 등이 분류되며, 제1211.20-1319호에서는 홍삼의 원물이 분류된다.

(2) 홍삼 제품의 품목 분류

홍삼 제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아래의 [표 2]와 같이 분류된다. 추가적으로 경우에 따라 수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관세 환급액으로 돌려주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홍삼 제품류도 있

으니 확인하여 홍삼을 제조해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이용하는 관세사를 통해 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표 2〉 주요 홍삼 제품류의 HSCODE 분류 체계

제품명	HS CODE	간이정액환급액	비고
홍삼	1211.20-1391	비대상	-
백삼	1211.20-1211	비대상	-
홍삼정과	2008.99-9000	비대상	-
홍삼절편	2008.99-9000	비대상	-
홍삼캡슐	1211.20-2220	10원	-
홍삼캔디	1704.90-2090	10원	-
홍삼젤리	2106.90-3029	10원	-
홍삼농축액	1302.19-1210	10원	-
홍삼생기력	2202.99-9000	10원	-
홍삼차(과립형)	2106.90-3021	10원	-
홍삼환	2106.90-3029	10원	-
홍삼공지환	2106.90-9099	10원	-
홍삼음료	2202.99-1000	10원	-
홍삼비타민	2106.90-3029 (기타 홍삼 제품류) 2106.90-9099 (기타 조제 식료품)	10원	성분 및 함유량에 따라 결정





(3) 주요 쟁점 사례(홍삼비타민)¹⁾

우리나라는 국내 인삼 산업, 특히 국내 홍삼 산업을 외국산 저가 홍삼으로부터 보호하고자 2007년 이후 홍삼 제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왔다. 그 결과 수입의 경우 수입 물품이 홍삼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외 일반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표 2]에서 보이듯 홍삼비타민의 경우 성분 및 함유량에 따라 HS CODE를 결정할 수 있다. 홍삼비타민 고세율 품목 분류 적용례와 관련하여 2017년도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7관0072)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수입자는 Red Ginseng Vitamin을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로 수입 신고하여 수리 받았으나, 처분청이 HSK 2106.90-3029호(기타 홍삼제품류)로 세율을 적용하여 고세율로 과세 처분되었다. 해당 물품의 품목 분류는 원칙적으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의거 '주'와 '호의 용어'로 분류한다. 따라서 물품명에 'Red Ginseng'이 들어가 있으면 '기타 조제식료품'이 속하는 세번 보다는 '기타 홍삼제품류'로 분류하는 것이 일견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결정 기관은 다음의 요지에 따라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주요 결정 요지를 파악해 보자면 홍삼 성분을 첨가한 발포비타민(Red Ginseng Vitamin)인에 대해 홍삼 성분이 주가 아닌 홍삼 성분을 첨가한 발포비타민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 물품의 주요 성분인 홍삼과 비타민 B12 중 쟁점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이 무엇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면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최종 호로 분류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쟁점 물품의 활성 성분인 홍삼과 비타민 B12의 경우 1일 섭취량을 기준으로 할 때 비타민 B12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물품을 HSK 제2106.90-9099호(기타 조제식료품)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결정례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 있다. 홍삼 제품의 경우에는 단독 제품으로 먹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비타민, 음료, 캔디, 캡슐 등의 제품에 첨가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홍삼(Red Ginseng)'이라는 글자가 물품명에 들어간다고 '홍삼 제품'의 HS CODE로 무조건적으로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1) 조심2017관0072

홍삼 제품의 경우 물품의 성질, 용도, 수량, 가격, 함유량, 구성 요소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품목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주요 홍삼 제품의 FTA 원산지 결정 기준 해설

홍삼 제품류 중에 많은 판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홍삼캔디와 홍삼음료에 대해 주요 협정국과의 예시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해석하고자 한다.

가. 홍삼캔디(제1704.90호, 한-미 FTA)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HS CODE 제1704.90호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A change to heading 17.04 from any other heading.)’으로 하여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으로 하고 있다. 4단위 세번 변경 기준(CTH)은 비원산지 원재료의 전부의 4단위 호와 완제품의 4단위 호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 지위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표 3〉 홍삼캔디의 BOM 예시

품명(재료명)	세번(HS)	원산지
홍삼캔디(완제품)	17 04.90	?
농축홍삼액	13 02. 19	미상
물엿	17 02.90	미상
말티톨시럽	38 24.90	미상
아스파탐	29 24.90	미상
합성착향료	21 06.90	미상
카라멜색소	21 06. 90	미상





상기의 홍삼캔디의 BOM 예시를 보면, 농축홍삼액(제1302.19호)부터 카라멜 색소(제2106.90호)까지 비원산지 원재료 전부의 4단위 호와 완제품인 홍삼캔디(1704.90)의 호가 전부 상이하다. 이 경우 [표 3]의 홍삼캔디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타 제반 원산지 요건이 충족한 경우 한국산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원산지 결정 기준이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이 아닌 2단위 세번 변경 기준이라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2단위 세번 변경 기준(CC)은 비원산지 원재료의 전부의 2단위류와 완제품의 2단위류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 지위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 사례에서 물엿(17류)의 경우 완제품인 홍삼캔디(17류)와 세번이 동일하기 때문에 '세번 변경'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 결정 기준 미충족으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경우라도 몇 가지 방법으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협정상 미소 기준(최소 허용 기준) 적용, 물엿에 대한 거래처를 한국산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거래처로 변경 등이 있으며, 후술은 생략한다.

또한 원산지 결정 기준이 4단위 세번 변경 기준이 아닌 6단위 세번 변경 기준이라면 원산지 결정 기준은 자동으로 충족한다. 세번 변경 기준의 경우 2단위에서 4단위로, 4단위에서 6단위로 갈수록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나. 홍삼음료(제2202.90호, 한-EU FTA)

한-EU FTA 협정문에서는 HS CODE 제2202.90호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표 4〉 홍삼음료의 원산지 결정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 도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009호의 모든 과일주스(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의 것은 제외한다)는 원산지일 것
4.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모든 사용재료는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Manufacture: -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 in which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of Chapter 17 used does not exceed 30 %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 in which all the fruit juice used (except that of pineapple, lime or grapefruit) of heading 2009 is originating, and - in which all the materials of subheadings 1211 20 and 1302 19 used are wholly obtained

일반적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완전 생산 기준,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 공정 기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단일 기준인 반면, 한-EU FTA의 홍삼음료의 경우 [표 4]에서 설명하고 있는 4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합 기준이어서 꽤나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표 5]의 예시를 통해 [표 4]의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해석할 수 있다.

〈표 5〉 홍삼음료의 BOM 예시

품명(재료명)	세번(HS)	원산지	소요량	가격
인삼	1211.20	KR	8.6g	355
영지	0712.39	KR	10.6g	300
대추	0813.40	KR	27.2g	120
구연산	2918.14	미상	1.3g	20
니코틴산아미드	2936.29	미상	0.5g	10
비타민C	2936.27	미상	0.3g	8
카라멜	1702.90	미상	1.0g	8
액상과당	1702.50	미상	1.0g	8
수크랄로스	2932.19	미상	0.2g	70
허브향(인삼)	2106.90	미상	0.2g	30



품명(재료명)	세번(HS)	원산지	소요량	가격
유리병	7010.90	미상	10ea	800
캡	8309.90	미상	10ea	270
라벨	4821.10	미상	10ea	120
홍삼음료 FOB가격 : 3,300		홍삼음료 EXW가격: 3,000		

①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단위 세번 변경 기준(CTH)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한다. 인삼, 영지, 대추의 경우 원산지(한국산)재료이므로 4단위 세번 변경 여부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 그 외에 원산지가 미상인 비원산지 원재료 전부의 4단위 호와 완제품인 홍삼음료(제 2202.90호)의 호가 전부 상이하다. ① 기준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17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17류에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MC 30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한다. MC법이란 역외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비원산지 재료/공장도 가격(EXW)]*100으로 계산한 값이 기준치 보다 낮아야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본 사례에서는 17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카라멜(17류, 8원)과 액상과당(17류, 8원)으로 총 2개이다. 17류 MC 값을 구해 보면, $[16\text{원}/3,000\text{원(EXW)}] \times 100 = 0.53\%$ 의 값이 나오게 되고 이는 기준치(30%)보다 한참 낮으므로 ②기준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009호의 모든 과일주스(파인애플, 라임 또는 자몽의 것은 제외한다)는 원산지일 것

원재료 중 제2009호의 모든 과일주스는 원산지 재료가 투입되었는지 따져야 한다. 본 사례에서는 BOM상 제2009호 자체가 투입되지 않으므로 ③기준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당연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모든 사용 재료는 체약 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것

원재료 중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원재료가 투입되는 경우 완전 생산된 한국산 물품인지 따져야 한다. 해당 사례의 경우 인삼(제1211.20)이 원재료로 투입되는데, 원산지가 한국산이므로 ④기준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당연히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원산지가 한국산임은 원산지확인서 등으로 서면 입증 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기 ①~④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각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해당 홍삼음료의 경우 기타 제반 원산지 요건이 충족한 경우 한국산으로 볼 수 있다.

4.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주요 홍삼 제품에 대한 품목 분류를 알아보고 예시를 들어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해석해 보았다. 홍삼 제품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함유량, 주성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 분류를 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품목 분류 분쟁 발생 전에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 분류 사전 심사를 신청하여 수입자는 고세율 추정 리스크를, 수출자는 FTA 원산지 결정 기준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홍삼 · 인삼 등의 경우 산업 특성상 경작자가 고령인 경우가 많고 문서 작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을 작성 및 수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관세청장 고시에 따라 지리적표시등록증이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니 적절히 활용하기를 바란다.

